

# 예산총칙

201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| 462,096,654 | 13,862,900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| 384,010,015 | 11,520,300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| 78,086,639  | 2,342,599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| 23,122,883  | 693,686    |
| 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| 23,122,883  | 693,686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| 54,963,756  | 1,648,913  |
| 의료급여기금운영          | 1,497,685   | 44,931     |
|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| 1,640,162   | 49,205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  | 243,497     | 7,305      |
|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     | 5,165,365   | 154,961    |
|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       | 16,237,672  | 487,130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          | 2,996,064   | 89,882     |
|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 | 27,183,311  | 815,499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2,941,050천원,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는 7,645,855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